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옥내 휴대용 화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87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옥내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병덕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10.
3. 회 부 일 : 2024.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일정한 소음기준 이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 이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옥내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안 제91조제1항)

개정안은 후보자로 하여금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 이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 제한) ① 누구든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演說·對談·討論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략)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 제한) ① ----- ----- ----- ----- ----- ----- 다만,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제79조제8항제2호¹⁾ 본문에 따른 소음기준 이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도 후보자로 하여금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 이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옥내선거운동으로 한정하여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자유와 주민의 평온한 생활의 권리를 조화롭게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확성장치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제한된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의 정견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수단이나, 확성장치가 야기하는 소음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화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1)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⑦ 생략

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2.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이하 생략)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확성장치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 제91조제1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2022. 7. 21., 2017헌바100).²⁾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이용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현행법 제59조 제4호가 개정되지 않는 한 옥내모임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여전히 제한되므로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2) 확성장치사용 금지조항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확성장치에 의해 기계적으로 유발되는 소음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일반 국민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모든 종류의 공직선거 때마다 확성장치로 인한 소음을 감내할 것을 요구하기 어려운 점, 선거운동에서 다소 전통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확성장치의 사용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로서는 보다 접근이 용이한 다른 선거운동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점, 확성장치의 출력수나 사용시간을 규제하는 입법이 확성장치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를 불러온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확성장치사용 금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나아가 확성장치사용 금지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써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확성장치사용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2. 7. 21. 2017헌바100)